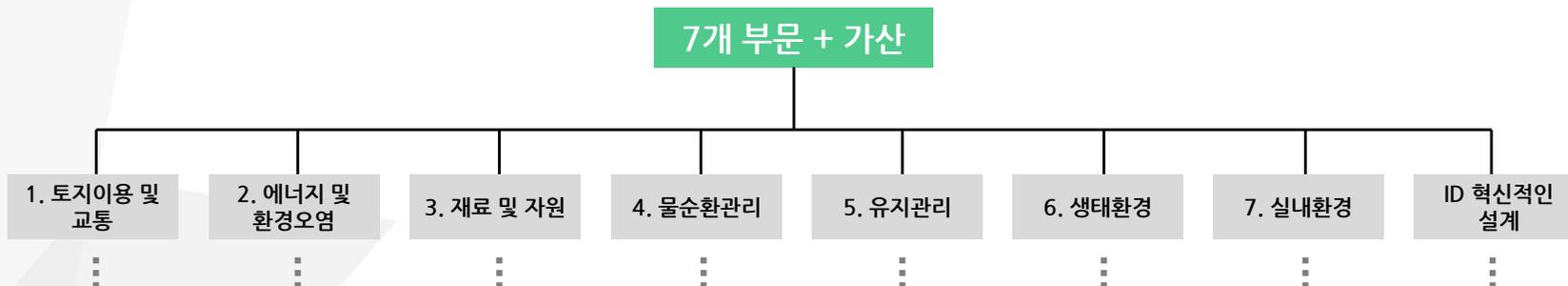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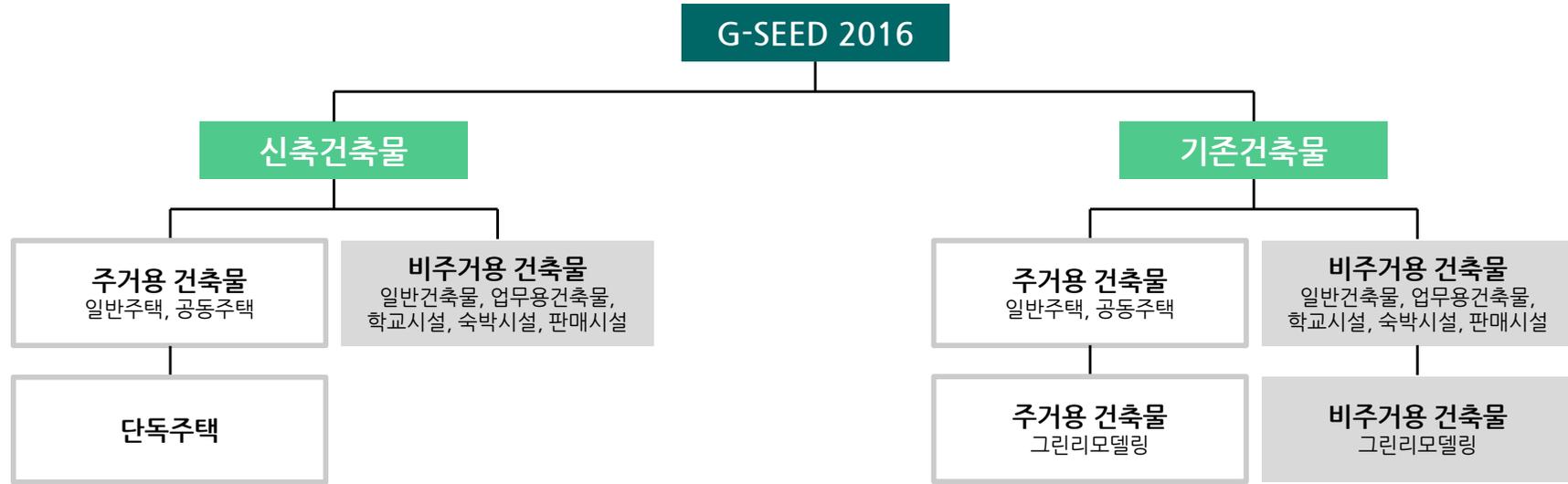
◆ 녹색건축인증 개요 (2021.03.26 일부개정, 2021.04.01 시행)

- ✓ 의무대상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공공업무시설 우수(그린2등급)등급 이상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7조])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성능등급 취득 의무)
※주택성능등급 의무대상을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8.12.31 개정, 2019.12.31 시행)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그린4등급~1등급 이상 [건축심의 및 허가 등을 신청하는 건축물로 건물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 ✓ 인증대상 건축물 : 신축건축물과 기존건축물(그린리모델링 포함)로 나뉘며 각각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등으로 분류
주거용(일반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일반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2개 이상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축물
 - 각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최종 인증점수는 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표에 따라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 ✓ 인증제외 대상 건축물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군사시설 제외
- ✓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 대상 : 3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인증의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 인증 평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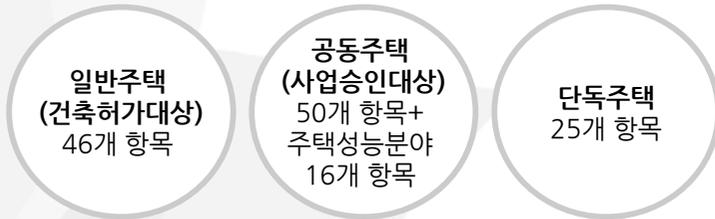


◆ 인증대상 건축물



◆ 건축물별 세부사항

✓ 주거용 건축물



✓ 비주거용 건축물





◆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 신축건축물

대상건축물	심사점수			비고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비주거용 건축물	
최우수(그린1등급)	74점 이상	74점 이상	80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그린2등급)	66점 이상	66점 이상	70점 이상	
우량(그린3등급)	58점 이상	58점 이상	60점 이상	
일반(그린4등급)	50점 이상	50점 이상	50점 이상	

✓ 기존건축물

대상건축물	심사점수		비고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최우수(그린1등급)	69점 이상	75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그린2등급)	61점 이상	65점 이상	
우량(그린3등급)	53점 이상	55점 이상	
일반(그린4등급)	45점 이상	45점 이상	

✓ 그린리모델링

대상건축물	심사점수		비고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최우수(그린1등급)	69점 이상	75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그린2등급)	61점 이상	65점 이상	
우량(그린3등급)	53점 이상	55점 이상	
일반(그린4등급)	45점 이상	45점 이상	

Tip. 초기설계단계부터 인증계획 없이 진행된 건축물의 녹색건축인증 자체평가점수는 45~60점으로 인증획득을 위해 기본설계단계부터 인증을 고려한 녹색건축 인증계획을 수립해야 함